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나.「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에 따라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안 제4조)

- 사용기간 : “3년을 원칙으로 하며” → “5년 이내로 하며”

나. 임시시장 운영 및 지역특산물 홍보·전시·판매 관련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등, 별첨 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2) 입법예고(2019. 10. 22.~2019. 11. 11.) 결과, 이상없음

3) 규제심사 : 개선사항 없음【기획감사실-10166(2019.10.11.)】

4)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41931(2019.10.14.)】

5) 비용추계서, 별첨 3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3년을 원칙으로”를 “5년 이내”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련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9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22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3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

에 매장(이하“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4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성주군 관할 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①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매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제4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 1개월 전에 별지1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용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 5년 이내 ----------.
제12조(운영기준) ①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 외에 임시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상인회) 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 18 조 (상 인 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21 조 (준 용 규 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